

의안번호	2206859
의 퇴 인	정희용의원
회 답 일	2025.1.8.
추계번호	24B6229
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산림의 기후위기 대응 지수를 개발하고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통계를 공개 및 홍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, 2030년 5,0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억원(연평균 8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 수의 개발 및 공표 (안 제26조)	50	-	-	-	-	50	10
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 (안 제35조)	100	-	-	-	-	100	20
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의 관리 (안 제37조)	50	50	50	50	50	250	50
합계	200	50	50	50	50	400	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 (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의 개발 및 공표)	○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(이하 “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”라 한다)를 개발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를 대상으로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2년마다 시·도별로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(제1항)	의무지출
2	안 제35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)	○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산림 안정성 및 회복력을 증진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(제1항)	의무지출
3	안 제36조 (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· 평가)	○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·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기후영향조사·평가”라 한다)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·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·재량 지출
4	안 제37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의 관리)	○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홍보하여야 함(제3항)	의무지출
5	안 제38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을 위한 연구개발)	○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기술 개발 2.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및 기술 개발 3.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·생산·분석·관리를 위한 표준 개발 4. 그 밖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	재량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6조 (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 수의 개발 및 공표)	○	○ 안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지수의 개발 할 경우 지수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○ 다만,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수개발을 통해 측정의 주체 및 대상, 구체적인 측정 방법 등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지수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비용 산출이 곤란함
2	안 제35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 책수립)	○	○ 산림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
3	안 제36조 (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 향 및 취약성 조사·평가)	-	○ 산림청은 「산림지원법」 제51조의5에 따라 임업·산림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5년 기준 11억원임 ○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
4	안 제37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 보 및 통계의 관리)	○	○ 산림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
5	안 제38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)	×	○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개발 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○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신규·강화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, 해당 과제별 세부 연구내용 및 기간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합리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26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비용으로 가정하며 유사사례를 준용함

- 안 제35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수립 연구용역 발주 비용으로 가정하며 유사사례를 준용함
- 안 제37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비용으로 가정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안 제26조 (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의 개발 및 공포)

- 산림청의 의견에 근거하여 유사사례로서 “목재문화지수 개발 용역비용”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수의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은 1년간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 첫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문화지수 개발을 위한 용역비용은 2013년 기준 3,400만원이 소요됐으며,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수의 개발을 위한 용역비용은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수의 개발 및 공포 (안 제26조)	50	-	-	-	-

나. 안 제35조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)

- 산림청의 의견에 근거하여 유사사례로서 “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사례 수립 기초연구”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은 1년간 수행되는 것으로

- 로 가정하여 추계기간 첫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산림청에 따르면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을 위한 용역비용은 2024년 기준 1억원이며, 사업의 규모 및 유사사례와의 시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은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 (안 제26조)	100	-	-	-	-

다. 안 제37조 (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및 통계의 관리)

- 산림청의 의견에 근거하여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·교육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추계함
 -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에 대한 홍보·교육 콘텐츠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중에는 예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 - 산림청 의견에 따르면, 1년간 온라인 홍보·교육 콘텐츠 제작비용(영상, 카드뉴스 등)으로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의 관리 (안 제26조)	50	50	50	50	50

- 추계결과, 국가가 산림의 기후위기 대응 지수를 개발하고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통계를 공개 및 홍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, 2030년 5,0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억원(연평균 8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 수의 개발 및 공표 (안 제26조)	50	-	-	-	-	50	10
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 (안 제35조)	100	-	-	-	-	100	20
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의 관리 (안 제37조)	50	50	50	50	50	250	50
합계	200	50	50	50	50	400	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산림청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연구용역 발주 비용 및 홍보자료 제작비용 단가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